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1일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5. 7. 21
-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95. 7. 26
-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8. 9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8. 9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 가. 제안사유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94. 12. 31)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제3조 제1항 제1호중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개정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중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
- 다.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백창기)

본 조례 개정은 94. 12. 31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록재산심사와 결과의 처리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만 실시하던 것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확대실시하며, 또한, 관련 법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변경시 달라진 점은?
- ▷ 94. 12. 3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등록재산심사를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결과처리를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게만 실시하던 것을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에게 확대실시한 것이며 재산공개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이며 등록대상은 감사 및 세무공무원 전원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u>법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u> 심사과 그 결과의 처리</p> <p>2. <u>법 제8조의 제11항 후단의 규정</u>에 의한 승인</p> <p>3~4<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기능) ①</p> <p>.....</p> <p>1. <u>재산등록사항</u> 심사과 그 결과의 처리</p> <p>2. <u>법 제8조의 제12항 후단의 규정</u>에 의한 승인</p> <p>3~4<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u>법 제8조 제6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 의뢰 및 <u>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4<생략></p> <p>③, ④<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p> <p>1. <u>법 제8조 제7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 의뢰 및 <u>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4<현행과 같음></p> <p>③, ④<현행과 같음></p>